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38
----------	--------

제안년월일 : 2023년 02월 28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위원 출석률의 기준이 되는 1년 단위의 기산점을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명확히 하고, 회의 개최 통보 시기를 7일 전에서 15일 전까지로 수정함.
- 또한, 운영 평가보고서 공개와 정비계획 및 전년도 정비실적 보고 절차를 구분하여 정비하고 부칙에 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위원 출석률의 기준이 되는 ‘1년 단위’ 를 ‘기산점을 위촉일로부터 1년 단위’ 로 명확히 함(안 제8조의2제1항제6호).
- 회의 개최 통보 시기를 7일 전에서 15일 전까지로 수정함(안 제10조제1항).

- 운영 평가보고서 공개와 정비계획 및 전년도 정비실적 보고 절차를 구분하여 정비함(안 제16조제1항, 제2항).
- 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함(안 부칙 제3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의2제1항제6호 중 “1년 단위”를 “1년 단위(위촉일로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① 시장 등은 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과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안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가 시행되는 다음 연도의 보고부터 적용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p> <p>1. ~ 5. (생략) <u>&lt;신설&gt;</u></p> <p>6. (생략)</p> <p>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6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시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제14조제2</p>	<p>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①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1년 단위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u>  7. (현행 제6호와 같음)</p> <p>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제16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u>시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제14조제2</u></p>	<p>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① (개정안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 6. <u>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u> 7. (개정안과 같음)</p> <p>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 15일 전 까지 ----- ----- ----- ----- ----- -----</p> <p>제16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① <u>시장 등은 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과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u></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항에 따른 위원회 <u>정비계획과 함께</u> 매년 6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lt;신 설&gt;</p>	<p>항에 따른 위원회 <u>정비계획 및 전년도 정비실적과 함께</u> 매년 6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lt;신 설&gt;</p>	<p>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시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3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가 시행되는 다음 연도의 보고부터 적용한다.</p>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폐치”를 “폐지”로 한다.

안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 현황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을 “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과”로, “정비계획과 함께 매년 6월”을 “정비계획을 매년 3월”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

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가 시행되는 다음 연도의 보고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p> <p>1. ~ 5. (생 략)</p> <p>&lt;신 설&gt;</p> <p>6. (생 략)</p> <p>&lt;신 설&gt;</p> <p>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 ⑥ (생 략)</p> <p>제14조(위원회 활동 점검 등) ① (생 략)</p> <p>② 시장 등은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p>	<p>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① ----- ----- ----- -----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p> <p>1. <u>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u></p> <p>2. <u>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을 적용이 어려운 경우</u></p> <p>3. <u>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u></p> <p>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15일 ----- ----- ----- ----- ----- -----</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14조(위원회 활동 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 5. (생략)

제16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시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과 함께 매년 6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신설>

-----.

1. ----- 폐지-----
2. ~ 5.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① -----  
 - 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과 -----  
 ----- 정비계획을 매년 3월 -----  
 -----.

② 시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가 시행되는 다음 연도의 보고부터 적용한다.